

재활보조기구 지급기준 및 개선방안 연구

- 토론회 자료 -

2009. 10.

노동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서론

-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가장 먼저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이들에게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 재해를 당한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 사업주에게는 공동 부담위험의 원리를 채택하여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산업평화유지와 근로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 이를 위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재해예방, 재활사업, 장학사업, 생활정착금 대부 등 근로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주요내용
- 산재 근로자의 재활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동부는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2001~2005), 제1차 재활사업 중기 발전계획(2006~2008)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2차 재활사업 중기 발전계획(2009~2011)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
 - 이러한 사업의 성과로 재활사업의 인프라 구축 등이 이루어졌으며, 재활보조기구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내구 연한의 도입, 지급 품목 확대 및 보조기구에 대한 기준가격의 적절한 인상 등의 성과
 - 재활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의 성과로 산재 근로자들이 재활 사업을 통해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되었음
- 재활보조기구는 요양과정의 의료재활은 물론, 이후 직업재활, 사회재활, 재활 전 과정에 소요되는 생활지원 장치로, 요양 종결 후 지속적 사용에 대한 비용 보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 적절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재 환자 및 산재 장애인에 있어 삶의 질 뿐 아니라 전체 산재보험에 대한 만족도 저하 유발
 - 산재보험에서의 재활보조기구와 관련한 재활 사업은 적절한 재활 치료를 통해 근로자의 사회 복귀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할 수 있으며,
 - 또한, 요양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적

으로는 생산성 있는 노동력의 손실을 방지하며, 사회적으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통해 사회통합을 증진시켜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의의

□ 2009년 현재 재활보조기구의 지급과 관련한 기준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품목, 지급 범위 및 수가에 대해 많은 보완이 있었으나, 의지, 보조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지급기준 등 개선 논의가 필요

- 특히 의지, 보조기의 경우, 그 동안의 물가상승율과 기술 발전에 따른 장애인의 욕구 증대를 만족 시킬 수 있는 보다 높은 기능과 고급 재료를 반영하는 품목 다양화와 수가 지급기준 등 논의 필요

2.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관련 지급기준 및 실태

1) 지급기준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일반원칙

- 재활보조기구는 해당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각각의 유형 및 용도별로 지급하되,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선택한 1개의 품목만 지급한다.
- 다리의지 중 실리콘형은 절단 후 남아 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종결시 지급하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시마다 추가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중에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할 수 있다.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수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관절 손상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로 인하여 통원치료시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경우에 한함

□ 추가지급

- 추가지급은, 잔존 장애로 인하여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도 보조기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요양 종결시 지급된 유형과 동일한 재활보조기구를 내구연한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지팡기, 목발,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현지팡이,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가발, 11개 품목의 추가지급 및 장착에 대해서는 시중업체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산재 장애인이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함

2)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 재활보조기구(장애인보조기구) 구입과 관련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지원들이 어느 정도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산재의 경우 68.9%가 만족
 - 비산재(66.2%), 전체(66.5%)와 비교할 때 약간 더 높은 충분도

〈표 3-17〉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지원 수준의 충분도

(단위: %, 명)			
구분	산재	비산재	전체
매우 그렇다	33.7	33.8	33.8
약간 그렇다	35.2	32.4	32.7
보통이다	8.0	15.8	15.1
별로 그렇지 않다	13.3	14.3	14.2
전혀 그렇지 않다	9.9	3.6	4.2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진수	31,841	331,270	363,114

-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시 만족도에 대해서는 산재의 경우 52.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는 비산재(56.4%), 전체(56.1%)와 비교할 때 약간 낮은 만족도임.

〈표 3-25〉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산재	비산재	전체
매우 만족한다	9.7	17.4	16.9
약간 만족한다	42.3	39.0	39.2
보통이다	28.9	22.7	23.1
약간 불만족한다	18.3	16.4	16.5
매우 불만족한다	0.9	4.5	4.3
계	100.0	100.0	100.0
전국추경수	49,081	750,381	799,465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주요 개선점으로는 산재의 경우 '급여비용의 인상'이 38.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지원품목의 확대'(19.2%), '개인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평가 및 사용지원서비스'(19.0%)의 순이었음.

- 비산재의 경우 '개인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평가 및 사용지원서비스'(28.4%), '급여비용의 인상'(21.7%), '지원품목의 확대'(18.8%)의 순이었고, 전체의 경우도 '개인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평가 및 사용지원서비스'(27.8%), '급여비용의 인상'(22.8%), '지원품목의 확대'(18.8%)의 순
- 이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지원 체계를 장애인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로 개편하고, 아울러 산재보험(요양급여) 등 공적 급여의 지원 수준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

〈표 3-27〉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방식에서 개선할 점

(단위: %, 명)

구분	산재	비산재	전체
개인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평가 및 사용지원서비스	19.0	28.4	27.8
각종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8.2	15.1	14.7
지원품목의 확대	19.2	18.8	18.8
신청 및 보급절차의 간소화	7.7	10.1	9.9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없음	7.8	5.7	5.8
급여비용의 인상	38.2	21.7	22.8
기타	-	0.3	0.3
계	100.0	100.0	100.0
전국추경수	56,141	851,141	907,286

2)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 실태(근로복지공단 자료)

□ 산재장애인에 대한 지급급여의 종류로는 이종요양비가 7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진료비 17.8%, 재활보조 2회이상 6.2%, 후유증상이종요양비 1.1%, 후유증상진료비 0.8%의 순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종요양비가 70% 이상의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산재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이종요양비이었음.
- 산재장애인에게 대해 지급된 2008년 지급연도별 급여종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종요양비가 12,059명에게 지급되었으며, 전체 중 71.5%를 차지하였으며 진료비가 5,194명에게 지급되어 28.5%를 차지

〈표 4-2-2〉 지급연도별 급여종류

(단위 : 명,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이종요양비	8,216	8,509	8,270	12,796	12,523	13,059	63,373
	82.2	75.1	72.0	74.7	72.1	71.5	74.1
재활보조 2회이상	293	1,563	1,656	1,807	0	0	5,319
	2.9	13.8	14.4	10.5	0.0	0.0	6.2
진료비	708	1,113	1,290	2,135	4,828	5,194	15,268
	7.1	9.8	11.2	12.5	27.8	28.5	17.8
후유증상 이종요양비	95	143	274	399	4	0	915
	1.0	1.3	2.4	2.3	0.0	0.0	1.1
후유증상 진료비	680	2	0	3	19	1	705
	6.8	0.0	0.0	0.0	0.1	0.0	0.8
전체	9,992	11,330	11,490	17,140	17,374	18,254	85,58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산재장애인에게 지급된 재활보조기구의 최초 추가 수리 구분에 대해서는 최초로 지급된 경우가 72.0%로 가장 높았고, 기타(EDI) 16.5%, 수리 7.9%, 추가 3.6%의 순
 - 한편, 2008년 지급연도별 최초·추가·수리는 최초가 11,933명으로 65.4%를 차지하였으며, 추가420명으로 2.3%, 수리가 705명으로 3.9%, 그리고 기타가 5,195명으로 28.5%임.

〈표 4-2-3〉 지급연도별 최초 추가 수리 구분

(단위 : 명,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최초	8,165	8,953	8,494	12,690	11,403	11,933	61,638
	81.7	79.0	73.9	74.0	65.6	65.4	72.0
추가	742	379	387	489	654	420	3,071
	7.4	3.3	3.4	2.9	3.8	2.3	3.6
수리	601	1,124	1,517	1,864	937	705	6,748
	6.0	9.9	13.2	10.9	5.4	3.9	7.9
기타*	484	874	1,092	2,097	4,380	5,196	14,123
	4.8	7.7	9.5	12.2	25.2	28.5	16.5
전체	9,992	11,330	11,490	17,140	17,374	18,254	85,58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기타는 근로복지공단 DB 중 '빈칸'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임.

- 의료기관 구분별 연도별 지급건수의 경우 2008년에는 보험시설제외지정의료기관이 13588건, 비지정의료기관 64건, 산재의료관리원 3722건, 재활공학연구소가 880건

〈표 4-2-19〉 의료기관 구분별 연도별 지급건수

(단위 : 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보험시설제외 지정의료기관	7917	8227	8004	11884	12638	13588	62258
비지정의료기관	235	340	371	290	282	64	1582
산재의료관리원	873	1217	1465	3205	3778	3722	14260
재활공학연구소	967	1546	1650	1761	676	880	7480
합계	9992	11330	11490	17140	17374	18254	85580

- 2008년도 의료기관 구분별 지급액을 보면, 보험시설제외 지정의료기관이 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산재의료관리원이 17억원으로 나타났음.

〈표 4-2-21〉 의료기관 구분 별 연도별 총 지급액

(단위 : 천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보험시설제외 지정의료기관	2,253,265	2,371,340	2,281,203	4,137,060	3,858,365	3,911,380	18812613
비지정의료기관	68,514.3	102,988.8	103,890.7	69,394.2	78,965.7	11,516.2	435269.9
산재의료관리원	331,042.4	362,958.1	401,967.9	1,112,011	1,354,273	1,743,750.0	5306003
재활공학연구소	521,600.1	712,474.6	711,442.9	802,259.1	30,4571.0	458,666.5	3511014
합계	3,174,422	3,549,761	3,498,505	6,120,724	5,596,175	6,125,313	28064900

- 지난 6년간 산재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총 청구금액은 약 356억이었고, 실제 지급한 총 금액은 약 327억
 - 2003년의 경우 31.7억원에서 2008년에는 61.3억원으로 증가

〈표 4-2-6〉 지급연도별 총 청구액 및 지급액

(단위 : 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청구액	3,646,916,120	3,894,692,900	3,916,865,255	6,779,229,618	6,111,266,046	6,192,725,049	30,541,694,988
지급액	3,174,422,180	3,549,761,245	3,498,504,545	6,120,723,750	5,596,175,058	6,125,313,081	28,064,899,859

3) 산재장애인 전화조사 결과

가) 산재장애인 전화조사 개요

- 1) 조사 기간 : 2009년 7월 ~ 8월
- 2) 조사 대상 : 산재장애인 및 가족 1,004명
- 3)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조사

나) 전화조사 결과

- 지급받은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73.3%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이 있다는 비율은 26.6%로 나타났음.
- 추가로 지급받은 재활보조기구에 대해서는 만족 비율이 77%, 불만 비율이 23%로 나타나 만족하는 경향이 조금 높게 나타났음.

〈표 4-2-〉 재활보조기구 이용 만족도

	재활보조기구 1		재활보조기구 2	
	명	%	명	%
매우 만족	208	20.7	46	31.1
약간 만족	528	52.6	68	45.9
약간 불만	201	20.0	24	16.2
매우 불만	66	6.6	10	6.8
모름/무응답	1	0.1	-	-
계	1,004	100.0	148	100.0

- 지급받은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몸에 잘 맞지 않아서’가 37.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품질이 떨어져서’가 24.3%로 나타나 재활보조기구의 품질 및 신체에 맞는 정도가 61.4%를 차지해 불만족의 가장 큰 요인
- 다음 요인으로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가 11.6%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 요인도 불만족 요인의 하나로 나타났음.

〈표 4-2-〉 재활보조기구 불만족하는 이유

구분	주 이유		추가 이유	
	명	%	명	%
본인부담 비용이 커서	31	11.6	4	11.8
구입절차가 복잡해서	5	1.9	1	2.9
거리 교통상 구입이 불편해서	7	2.6	-	-
몸에 잘 맞지 않아서	99	37.1	8	23.5
품질이 떨어져서	65	24.3	13	38.2
제품이 다양하지 않아서	11	4.1	4	11.8
A/S가 안되어서	1	0.4	1	2.9
환자가 너무 의지하게 되어서	-	-	1	2.9
외관상 보기 안 좋아서	2	0.7	-	-
더워 불편해서/땀이 많이 나서	7	2.6	1	2.9
다시 해야해서	-	-	1	2.9
누울 때 벗어놔야 해서	1	0.4	-	-
봄, 여름 길 필요가 없어서	1	0.4	-	-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서	10	3.7	-	-
작동 시간이 길어서	1	0.4	-	-
끝이 부드럽지 않아서	1	0.4	-	-
너무 딱딱하여 앉기가 불편해서	3	1.1	-	-
답답해서	4	1.5	-	-
팔걸이가 없어서	1	0.4	-	-
무거워서	5	1.9	-	-
상치부위를 건드려 매우 아파서	1	0.4	-	-
운행이 잘 안되어서	1	0.4	-	-
효능을 못 느껴서	2	0.7	-	-
피부에 고무가 닿아 물집이 생겨서	1	0.4	-	-
사용이 까다로워서	3	1.1	-	-
빗기가 불편해서	1	0.4	-	-
보조대가 발을 찰러 아파서	1	0.4	-	-
모름/무응답	2	0.7	-	-
계	267	100.0	34	100.0

주이유 : 비해당 = 737 / 추가이유 : 비해당 = 970

- 산재 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 지원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항목은 개인별 상황과 욕구에 맞는 재활보조기구에 대한(알 수 있도록) 상담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1,004명 중 217명이 응답하여 21.6%,
- 각종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이 18.2%로 나타나 산재장애인의 개별 특

성에 맞는 재활보조기구를 알 수 있도록 상담 및 정보제공, 기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재활보조기구 급여 비용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6.3%, 재활보조기구 지원품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4.7%로 나타나 재활보조기구 지원 비용 및 지원되는 품목의 확대를 요구하는 욕구가 높았으며,
- 이외에 재활보조기구 신청 및 지급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1%로 나타났음.

〈표 4-2-〉 재활보조기구와 관련한 개선 사항

구분	명	%
개인별 특성/욕구에 맞는 재활보조기구의 상담 및 서비스 필요	217	21.6
각종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이 필요	183	18.2
재활보조기구 지원품목의 확대가 필요	148	14.7
재활보조기구 신청 및 지급절차의 간소화가 필요	91	9.1
재활보조기구 급여비용의 인상 필요	164	16.3
품질 개선	11	1.1
기타	53	5.3
없다	80	8.0
모름/무응답	57	5.7
계	1,004	100.0

- 재활보조기구 신청 및 지급절차에 대한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어떤 부분에 대한 간소화가 필요한지를 보면,
 - 40.7%가 개인적으로 구입 후 요양비 청구 절차
 - 22%가 최초 재활보조기구 구입을 위한 신청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
 - 16.5%가 재활보조기구 추가 지급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응답
 - 이외에 재활보조기구 수리를 위한 신청 및 청구절차를 간소화 해야한다는 응답이 11%
 - 멀리까지 가는 것이 불편, 환자가 먼저 사고 나중에 돈을 받는 시스템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내용도 있었음.

〈표 4-2-〉 재활보조기구 신청 및 지급절차의 간소화 필요에 대한 세부 불편요인

구분	명	%
최초 재활보조기구 구입을 위한 신청 절차	20	22.0
개인적으로 구입 후 요양비 청구 절차	37	40.7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15	16.5
재활보조기구 수리를 위한 신청 및 청구절차	10	11.0
처리가 느리다	1	1.1
멀리까지 가는 것이 불편	2	2.2
환자가 먼저 사고 나중에 돈을 받는 점이 불편	2	2.2
모름/무응답	4	4.4
계	91	100.0

비례당 = 913

- 산재보험에서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은 특정 항목 외에는 재활공학연구소 및 산재의료원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절차 지급에 대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6.5%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절차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는 58.3%가 만족하며, 34.6%는 만족하지 않았음.

〈표 4-2-〉 추가지급절차 만족여부

구분	명	%
예	585	58.3
아니오	347	34.6
모름/무응답	72	7.2
계	1,004	100.0

- 만족하지 않는 347명에게 불만족 사항을 물었는데, 지급받는 절차의 복잡해서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23.9%로 가장 많았으며,
 - 구입시 거리 교통상 불편으로 인한 불만족이 19.8%
 - 이외에 제품이 다양하지 않고(18.2%), 제품 사용이 불편하며(10.6%), 시중업체보다 구매시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8.3%로 나타났음.

〈표 4-2-〉 추가지급절차 불만족 사항

구분	명	%
구입시 거리 교통상 불편	69	19.8
지급받는 절차의 복잡	83	23.9
시중업체 구매시보다 비싼 가격	29	8.3
제품 사용이 불편	37	10.6
제품이 다양하지 않음	63	18.2
아무 곳에서도 구입할 수 없었으면	5	1.4
기타	24	7.1
모름/무응답	37	10.7
계	347	100.0

비해당 = 657

- 산재 장애인들이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지원하기를 바라는 항목
 -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물품 중에는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에 대한 확대 요구가 많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급되는 품목의 상향(고가의 제품으로 까지 확대), 혹은 지원금의 상향 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산재보험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재활보조기구 중 확대를 욕구하는 항목은 재활운동기구의 비율과 통증 완화를 위한 마사지 및 치료기에 대한 욕구가 많았으며,
 - 이외에 유린백(집노기), 대소변 관리 재활보조기구, 석선기(치료보조기구)에 대한 욕구가 있었음.
 - 집노기의 경우, 현재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회 당 지급 개수(2009년 1개에서 2개로 개선) 및 여성전용 집노기 보험지급에 대한 개선 요구로 판단됨.

〈표 4-2-〉 확대가 필요한 품목

구분	명	%	
산재보험에서 지급중인 물품	전동 휠체어	6	10.0
	휠체어	7	11.7
	손목 보조기	1	1.7
	허리 보조기	5	8.3
	어깨 보조기구	1	1.7
	의수	2	3.4
	의족	2	3.4
	무릎보호대	1	1.7
	손보호대	1	1.7
	보호대	1	1.7
	보조 기구	4	3.3
	지팡이	1	1.7
	신발	1	1.7
	욕창방석	4	6.7
	침대 (욕창방지침대)	2	3.3
산재보험 지급하지 않는 물품	수술후에 필요한 찢질기구	1	1.7
	전신 안마기	2	3.3
	허리마사지기	1	1.7
	물리치료 기구	1	1.7
	발목관절	1	1.7
	팔목관절	1	1.7
	팔걸이가 있는 제품	1	1.7
	대소변 재활기구	3	5.0
	중환자용 재활기구	1	1.7
	재활운동기구	5	8.3
	유린백	1	1.7
	벨트 제품	1	1.7
	석선기	2	3.3
전동기	1	1.7	
식염수	1	1.7	
계	60	100.0	

3. 국민건강보험 등 국내 다른 보험에서의 재활보조기구 지급 실태

1) 국민건강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 실태

□ 건강보험공단 지급 재활보조기구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 2003년의 지급건수는 27,063건, 2004년 32,079건, 2005년 49,141건, 2006년 69,341건, 2007년 96,844건, 2008년 89,318건으로 나타나 2003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 특히, 의지나 보조기, 휠체어, 전공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보청기 등 재활보조기구의 지급건수가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표 4-1〉 건강보험공단 지급 재활보조기구 지급 현황

(단위 : 건)

지급건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의지	2,959	3,545	4,982	5,124	4,957	5,144	26,711
보조기	4,892	6,219	7,978	9,312	12,563	11,427	52,391
지팡이	377	507	591	408	801	1,089	3,773
목발	111	104	151	89	153	117	725
휠체어	5,477	6,578	8,365	10,535	13,812	16,493	61,260
전동휠체어	-	1	2,324	5,563	11,493	6,090	25,471
전동스쿠터(Moped)	-	-	2,344	7,433	14,964	7,300	32,041
정형외과용구두	-	-	2,964	7,298	11,684	12,976	34,922
저시력보조안경	570	823	1,112	1,278	1,367	1,289	6,439
콘택트렌즈	65	66	118	93	114	115	571
돋보기	134	185	236	280	236	386	1,457
망원경	40	65	60	86	61	59	371
의안	1,633	2,029	1,978	2,203	2,472	2,458	12,773
휠지팡이	353	470	467	504	449	464	2,707
보청기	10,229	11,275	15,286	18,968	21,561	23,734	101,053
체외용인공후두	223	212	185	167	157	177	1,121
계	27,063	32,079	49,141	69,341	96,844	89,318	363,786

□ 건강보험공단의 지급 재활보조기구 지급액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에 전동휠체어, 전

동스쿠터, 보청기, 휠체어, 의지 등 순으로 지급액이 높았음.

- 지급액 합계 기준으로 보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라 다른 지급 재활보조기구에 비하여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 다음으로 의지나 보청기, 휠체어 순

〈표 4-3〉 건강보험공단 지급 재활보조기구 지급액 현황

(단위 : 천원)

지급건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의지	2,276,526	2,886,232	5,146,767	5,533,253	5,333,846	5,507,238	26,683,861
보조기	1,039,643	1,296,409	2,023,077	2,552,143	3,388,353	3,065,847	13,365,471
지팡이	5,673	7,752	8,932	6,060	12,338	16,861	57,617
목발	1,359	1,273	1,808	1,061	1,813	1,391	8,705
휠체어	1,244,202	1,498,459	2,579,940	3,685,257	5,033,913	6,150,551	20,192,322
전동휠체어	-	1,080	3,862,317	9,244,597	19,126,660	10,131,130	42,365,783
전동스쿠터(Moped)	-	-	3,098,296	9,865,394	19,949,036	9,729,420	42,642,146
정형외과용구두	-	-	516,382	1,275,998	2,051,141	2,282,136	6,125,657
저시력보조안경	43,526	63,609	85,983	98,699	105,927	100,924	498,667
콘택트렌즈	3,752	3,936	6,947	5,434	6,778	6,771	33,618
돋보기	8,793	12,223	16,548	18,977	16,305	28,426	101,271
망원경	2,978	4,847	4,526	6,361	4,726	4,555	27,993
의안	391,255	485,438	473,458	528,256	592,130	589,454	3,059,993
휠지팡이	3,934	5,253	5,207	5,611	4,984	5,176	30,166
보청기	2,039,396	2,247,835	3,765,151	5,097,145	5,845,953	6,410,204	25,405,685
체외용인공후두	87,200	84,800	73,824	66,440	62,800	70,900	445,964
계	7,148,239	8,599,147	21,669,161	37,990,686	61,536,703	44,100,986	181,044,920

2) 국가보훈법의 재활보조기구 지급실태

□ 국가보훈처의 보철구 연도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 '90년에는 5,100개 지급되었던 보철구 수가 매년 증가하여 07년에는 12,148개가 지급되었으나 08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10,022개가 지급
- 특히, 2008년 국가보훈처 보장구 지급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지에서는 전박이 80건으로 가장 많이 지급되었고, 하지에서는 하퇴가 312건으로 가장 많이 지급

- 보조장구에서는 보조기 3,650건으로 가장 많이 지급되었으며, 특수보철구에서는 보청기가 324건 지급
- ※ 보철구의 국가표준(KS) 명칭은 “보조기구 또는 재활보조기구”임

<표 국가보훈처 보철구 연도별 지급 현황 >

(단위 : 개)

구분	품목별	연도별										
		90	95	00	01	02	03	04	05	06	07	08
상지	견 갑 shoulder	13	17	12	15	12	8	7	6	6	9	6
	상 박 upper elbow	105	98	64	44	36	41	33	35	28	32	42
	주관절 elbow	2	3	5	4	13	3	-	-	1	1	2
	견 박 low elbow	225	247	149	107	111	79	102	90	97	87	80
	수 부 hand	23	12	16	26	16	29	18	23	30	28	35
	수 지 finger	93	39	56	56	26	27	42	44	47	34	36
	고관절 hip joint	8	9	6	3	4	6	4	2	2	4	6
하지	대퇴 femur	295	321	150	161	163	165	123	109	138	128	118
	슬관절 knee joint	42	39	29	16	16	31	2	15	15	16	18
	하퇴 lower femur	770	837	343	378	457	400	352	305	351	377	312
	족부 foot	100	104	74	75	62	75	51	65	56	60	67
	족지 toe	130	82	82	84	44	67	50	49	61	53	47
보조장구	보조기 aid apparatus	790	1,022	1,624	2,588	2,868	2,933	3,006	2,682	3,239	3,382	3,650
	척추보조기	230	483	586	579	604	678	838	943	861	854	895
	aid apparatus of spinal	400	423	439	400	316	383	433	396	401	392	402
	철크러치 iron crutch	485	1,358	2,447	2,289	2,311	2,023	4,260	4,000	4,000	4,001	2,452
	지팡이 cane	410	80	118	74	83	144	152	150	150	150	145
	목크러치 wooden crutch	-	69	64	71	76	114	84	106	124	130	124
	맹인용지팡이 stick	90	138	96	100	86	99	78	95	85	106	90
	맹인용안경 spectacles	3	1	5	7	4	4	4	-	8	9	6
	호흡기 breathing apparatus	5	1	2	7	2	3	1	4	2	2	2
	인공요장 artificial urinary organ	-	28	215	127	203	561	199	244	439	257	209
	약시용안경											

특수보철구	의자차 wheel chair	182	162	324	417	389	337	1,500	478	458	833	100
	보청기 hearing aid	103	100	151	204	133	310	213	214	238	223	324
	맹인용시계 braille watch	100	2	129	81	45	46	89	89	97	99	66
	의이 artificial ear	6	300	-	2	-	3	2	3	2	2	1
	의안 artificial eye	380	105	154	187	139	192	216	152	175	165	174
	의치 artificial denture	100	-	30	115	281	146	122	271	260	297	195
	맹인용pc	-	-	-	-	12	24	317	96	29	40	22
	비데	-	-	-	-	67	49	36	41	25	21	10
	욕창방석	-	-	-	-	273	322	157	222	373	272	299
	팩시밀리	-	-	-	-							
	독서확대기	-	-	-	-			20	15	14	8	4
	브레일라이트	-	-	-	-			10	11	22	12	11
	욕창매트리스	-	-	-	-			5	5	13	14	9
	홍채렌즈	-	-	-	-			-	-	-	39	45
	계	5,100	6,080	7,370	8,217	8,929	9,302	12,526	10,960	11,847	12,148	10,022

3) 노인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 복지용구는 구입전용 10개, 구입 및 대여 6개로 총16종이 있으며 이동형 좌변기, 목욕의자, 보행자 등의 구입 전용 품목과 휠체어(수동형), 전동형 침대, 수동형 침대 등의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이 있음

※ 복지용구는 노인용 “보조기구 또는 재활보조기구”를 말함

<표 4> 급여대상 대상 복지용구 (구입전용 10개, 구입 및 대여 6개)

구입 전용 품목(10종)	구입 또는 대여 품목(6종)
- 비교적 저렴한 품목 - 타인이 재사용하기에 저항감을 갖는 품목 -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품목	- 비교적 고가의 품목 - 소독 등을 통해 타인이 재사용하는 큰 문 제가 없는 품목
① 이동형 좌변기 ② 목욕의자 ③ 보행차 ④ 보행보조차 ⑤ 안정손잡이 ⑥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 매트, 미끄럼방지재, 미끄럼방지양말) ⑦ 휴대용 배변기 ⑧ 지팡이 ⑨ 욕창방지 방식 ⑩ 자세변환용구	① 휠체어(수동형) ② 전동형 침대 ③ 수동형 침대 ④ 욕창방지 매트리스 ⑤ 욕창방지 방식 ⑥ 이동욕조 ⑦ 목욕리프트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인정자 수를 살펴보면, '08년 7월에 146,643명이 '09년 5월에 259,456명으로 증가
- 이용자수의 경우 08년 7월에 76,476명에서 09년 202,492명으로 증가
 - 이용률로 보면, '08년 7월 52.2%에서 '09년 5월 78.0%로 급증

<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자 현황

(단위: 명, %)

	08.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9. 1월	2월	3월	4월	5월
인정자수(a)	146,643	166,598	183,065	194,456	205,361	214,480	222,700	232,230	242,080	251,290	259,456
이용자수(b)	76,476	100,285	114,624	127,048	139,048	148,749	157,046	167,119	185,530	195,197	202,492
이용률(b/a)	52.2%	60.2%	62.6%	65.8%	67.7%	69.4%	70.5%	72.0%	76.6%	77.7%	78.0%

5. 외국제도의 시사점

1) 미국

- 산재보험에서의 재활보조기구 지급은 요양 급여(medical benefits)를 통해 이루어지며, 메디케어 등 다른 공적 급여제도와 구별되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지급되는 재활보조기구 품목에 제한이 없다는 점임.
 - 캘리포니아 노동법 4600조(California Labor Code section 4600)에 따르면 고용주는 산재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치료하거나 완화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의 모든 진료, 치료 및 입원 및 간호서비스, 재활보조기구 등을 제공
 - 따라서 메디케어 등 다른 공적급여의 경우 특정한 품목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산재보험에서는 재활보조기구 품목에 관한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음.
 - 산재보험 하에서 의사는 산재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가장 적절한 재활보조기구를 처방하며 또한 착용 훈련, 수리 및 교체 등 관련된 서비스도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으며, 이는 전액 보험 제정으로 충당
 -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재활보조기구는 산재 근로자의 남은 생애기간 동안의 보호(lifetime care) 또는 미래의 보호(future care) 까지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임.
 - 이는 단순한 재활보조기구의 지급뿐만 아니라 미래의 보호에 필요한 각종의 정보, 재활보조기구의 장착 및 훈련 비용, 수리 및 교체 비용까지 포함
 - 산재보험 하에서 의사가 치료 목적이 아니라 재해의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처방할 경우에는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하는 내용의 서류가 제출
 - 여기에는 진단명, 진단명이 재해와의 관련성,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및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영역에서의 기능 손실, 감각 기능의 손상, 의사소통 능력의 손상 또는 인지능력의 손상 등이 명시
 - 또한 환자에게 있어서 재활보조기구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 즉 재활보조기구 환자의 손상된 기능을 어떻게 고양시킬 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예상되는 사용 기간 등도 명시

- 그리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치료사의 사정 내용 뿐만 아니라 재활보조기구 장착 훈련, 유지 및 수리, 교체 등에 관한 정보도 포함
- 마지막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안전성, 비용 효과성, 혼자 사용 가능 여부, 과거의 경험 등도 기술되어야 함.

2) 일본

- 보장구 지급사업의 취지는 업무 제해 또는 통근 재해로 인하여 상·하지의 망실 또는 기능 장애 등의 경우 의지 그 외의 보장구 등이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 노동재해 보험에서는 사회복귀 촉진 등 사업의 하나로써 의지 등 보장구의 지급을 실시
- 의지 등 보장구의 지급 종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총 24 종목으로 정해져 있으며, 각 보장구의 지급기준 및 지급의 범위

<표 > 일본의 노동재해보험에서 지급하는 재활보조기구 품목

연번	지급품목	증상 조회	장착훈련·적합판정	채형지도
1	의지			0
1-2	근전전동의수		0	0
2	상지보조기 및 하지보조기			0
3	척추보조기			0
4	座位保持裝置			0
5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6	의안			
7	안경	0		
8	접자기			
9	보청기			
10	인공후두			
11	휠체어			0
12	전동휠체어			0
13	보행기			
14	收尿器			
15	스토마용장구	0		
16	보행보조지팡이			
17	가발			
18	관장기 부착 배변제	0		
19	욕창방지용메트			
20	개조용 리프트			
21	욕창방지용 패드			
22	캐치베드			
23	重度장애자용 의사진달장치	0		

- 일본 노재보험은 2009년 4월부터 의지 등 보장구의 지급방법에 나타난 변화
 - 첫째, 지금까지의 의지 등 보장구의 현물지급에서 구입이나 수리에 드는 비용의 지급으로 변경
 - 둘째, 신청자가 수령 위임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입이나 수리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
 - 즉, 신청자는 의지 등 보장구의 구입이나 수리를 하는 업자에게 국가에서 지급

되는 금액의 수령을 위임하게 되면, 해당 업자에게 구입이나 수리에 드는 비용 (기준으로 정한 금액의 범위 내로 한함)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

- 셋째, 일정 요건 하에서 신청자가 기준금액과의 차이를 자기부담으로 지급할 경우, 기준액을 초과하는 의지 등 보장구의 구입이나 수리가 가능

6. 재활보조기구 지급관련 개선 방안

가. 재활보조기구 업종의 특성

- 기술수준 및 생산방식의 다양성
- 지속적인 수요의 증가
- 제작 및 판매업체의 영세성
- 이중적 유통구조

나.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 관련 문제점

1)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품질 관리 시스템 보완 필요

- 2007년부터 의료기기법과 국가산업표준(KS)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 품목 중에서도 수동,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용품 등 완성제품에 대하여는 국가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의한 선진국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가 구축됨. 그러나 의지·보조기에 대한 품질관리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 특히 의지 보조기의 경우, 대부분 이중 요양급여비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추가지급은 재활공학연구소에서 현물급여의 형태로 전담 지급
 - 다만, 재활보조기구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업체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국산 또는 수입 완성품에 대한 의지·보조기의 품질관리 시스템이 현재 의사의 검수 과정만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1회성 검수 외에 산재 장애인에게 유용하게 제작되어 활용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시스템의 보완 필요

2) 투명한 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산재보험 재정 효율화 필요

- 대부분의 재활보조기구 지급은 이중요양비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며, 현물급여인 추가지급은 그 비중이 3% 정도에 불과한 실정
 - 이러한 민간중심의 지급은 산재보험 재정에서 누수의 가능성을 높이며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산재환자 또는 가족이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민간업체들은 의학적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은 규격미달의 제품을 공급하며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재활보조기구가 생활필수품인 산재장애인에게 이중고의 피해

3) 재활보조기구 지급 개선 및 품목 확대 필요

- 재활보조기구의 수가는 산재보험에서 기준가격이 제시되어 있으나 보다 질 높은 재활보조기구를 선호하는 산재장애인은 추가로 자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
 - 질 높은 재활보조기구를 선호하는 산재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한 재활보조기구 지급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선진국 대비 급여 품목 확대 고려 필요
 - 수백 내지 수천종의 재활보조기구의 지급되고 있는 구미 및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100여종의 품목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제공과 의료적 만족을 도모하기는 원천적으로 무리
 - 단기적으로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코드화를 통해 품목확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재활기구의 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품목으로 확대를 고려할 필요

4) 전문성과 접근성 문제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가까이에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현재에는 추가지급의 경

우 재활공학연구소에서 전담함에 따라 전문성은 있으나 접근성의 문제가 제기

5) 처방 담당 의사의 질 관리를 통한 처방 검수 과정의 전문화

- 현행 산재 재활보조기구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품질관리를 위해 산재 재활보조기구는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을 둔 정확한 처방과 검수가 필수적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처방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실정으로 처방 담당 의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필요

다. 재활보조기구 지급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주요 과제

1) 기본방향: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 산재 장애인에게 있어서 재활보조기구는 신체의 일부로서 재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필수요소
 - 따라서 산재보험에 있어서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확대, 질 높은 재활보조기구의 이용에 대한 욕구 반영, 그리고 전달체계의 개편 등을 통해 산재장애인에게 적합한 재활보조기구를 효율적으로 지급함으로써,
 - 첫째, 산재장애인의 원 직장으로서의 복귀나 교육, 직업, 사회, 심리적 재활의 각 영역에서의 개인의 잠재력의 극대화를 유도하고,
 - 둘째, 산재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하고 안전성을 갖춘 재활보조기구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산재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산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 셋째, 산재 장애인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재활보조기구를 적절한 시기에 최소한의 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강화
- 산재 장애인의 편의성 극대화 및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투명하고 과학적인 선진국 수준의 재활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2) 주요 과제

<단기 과제>

재활보조기구 지급기준 개선

- 품목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관련 개선사항
-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검수·청구 관련 개선사항
- 현행 추가지급 접근성 문제 관련 개선사항

재활보조기구의 품질관리 강화

- 의지, 보조기 제조용 주요 구성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등록제 실시
- 지역별 민간 업체의 지정, 기술지원을 통한 접근성 개선과 기술 표준화

품목의 다양화와 추가 품목의 확대

- 주요 재활보조기구 코드화를 통한 품목의 다양화
- 재활보조기구 지급 품목의 확대
 - 생활용구
 - 시청각 보조기구
 - 정보통신 관련 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기능의 강화

- 처방의사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
- 처방·검수 행위의 내실화 및 관련 수가의 현실화

전문성 및 접근성 제고 방안

- 재활보조기구 민간 지정업체를 선정하고, 관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되, 재활공학 연구소에서 위탁운영

<부록>

<중장기 과제>

□ 산재 재활보조기구 전달체계 개편

- 지정업체 확대 운영 및 업체 직접 청구제도 도입
- 재활보조기구 품목 코드화의 전면적 도입

□ 재활공학연구소의 역할 재정립

- 고 품질 제품 욕구충족을 위한 국산화 연구개발 기능 강화
- 직접적인 대민서비스의 축소 및 지정업체 관리 업무 강화
- 지역 거점으로서의 재활공학연구소 권역별 서비스센터의 기능 강화
- 지정업체 및 일반 의해보조기 기사에 대한 교육 훈련 기능 부여
- 기존의 시험검사 기능과 연계된 재활보조기구에 품질관리 기능 강화

□ 재활보조기구 품질 향상 방안

- 고 품질 재활보조기구의 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기준 금액의 현실화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종류

1) 국민건강보험과 공통되는 재활보조기구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팔 의 지	어깨가슴의지 (fore-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20,000	4
			기능형	1,400,000	4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90,000	4
			기능형	1,470,000	4
	짧은 위팔 의지 (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표준 위팔 의지 (Standard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1,240,000	3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very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860,000	3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 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근 위부를 남기고 (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50,000	1	
		기능형	820,000	2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20,000	1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다리의지	한쪽편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편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관형	2,270,000	5
	넓적다리체중부하 의지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관형	2,270,000	5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490,000	3
			실리관형	2,010,000	5
	종아리굴곡체중부하 의지 (bent-knee end-bearing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290,000	3
			실리관형	1,810,000	3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860,000	3
			실리관형	1,520,000	3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740,000	3	
		실리관형	1,480,000	3	
씨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발목관절 직상근위 정강뼈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530,000	2	
		실리관형	1,040,000	3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20,000	1	
		실리관형	720,000	2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팔보조기	어깨뼈 외전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90,000	3
	긴 팔 보조기 (long arm brace)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범위를 재조정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용		240,000	3
	긴 팔 보조기 (각도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260,000	3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90,000	3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f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50,000	3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전, 굴곡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칼라식 보조기		70,000	3
	목뼈 보조기 - 토마스소프트칼라 (Thomas Soft Collar)	굴곡, 신전 조절이 가능한 경증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60,000	3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380,000	3
	척추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50,000	3
	척추보조기 - 윌리엄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등·허리 엉치뼈 보조기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프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400,000	3
	등·허리 엉치뼈 제킷 (TLSO식 Jacket)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후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80,000	3
	콜셋(Corset)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후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80,000	3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골반보조기	골반보조기 (pelvic band)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2
	긴 다리 보조기 (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골반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540,000	3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410,000	3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다리마비일 때 양쪽 긴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790,000	3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Lenox-Hill)	무릎관절 손상시 무릎관절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160,000	3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안쪽 및 바깥쪽 결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결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80,000	3
	짧은 다리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 식)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370,000	3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굽힘근육과 발바닥 굽힘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120,000	3
	발목관절 보조기 - 고정 (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240,000	3
	발목관절보조기 - 크렌자크식 (Klenzark type ankle joint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신전운동의 약화가 있는 경우 사용		320,000	3
	발목관절 보조기 - 90°고정 (90° 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굴곡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140,000	3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기타보장구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20,000	2
	목발(crutches)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5,000	2
	휠체어(wheel chair)			480,000	5
	저시력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100,000	5
	콘택트렌즈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80,000	3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의안(plastic eye)			300,000	5
	원지팡이			14,000	0.5
	보청기(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340,000	5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
	전동휠체어	지체장애인 등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중 팔의 기능이 전폐되었거나, 남아있는 손가락의 기능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 활용할 수 있을 경우 사용		2,090,000	6
	전동스쿠터 (Moped)	지체장애인 등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의 기능이 이상이 없고 활동영역이 넓은 자로서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경우 사용		1,670,000	6
정형외과용구두 (Orthopedic shoes)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다만, 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220,000	2	

2) 근로복지공단에서만 별도로 공급하는 재활보조기구

(1) 의지

구분	분류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 연한
팔의지	타-7-1	근전전동의수 (myoelectricall controlled, motordriven below-elbow prosthesis)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짧은 아래 팔의지(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지급대상자서 단단부의 잔존근육에 의한 근전도 제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산재근로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 수가 적합한 경우	5,500,000	5년
다리의지	타-14-1	넓적다리 의지 (A-K prosthesis)(공압식 또는 유압식 ; Pneumatic or Hydraulic Control Type)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의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가. 일반형 소켓		1,905,000	3년
	나. 실리콘형 소켓		2,735,000	5년	
	타-15	넓적다리 의지 (A-K prosthesis)(공압식 또는 유압식 ; Intelligent Contror Type)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의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가. 일반형 소켓		3,284,000	3년	
	나. 실리콘형 소켓		4,116,000	5년	

(2) 보조기

구분	분류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 연한
팔 보조기	타-23	짧은 팔 보조기 다. 운동형 짧은 팔 보조기	손목관절 관절운동 제한 또는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142,000	3년
척추 보조기	타-24	목뼈 보조기 (cervical spine brace) 라. 4지주 목뼈보조기	두부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해야 할 정도의 중증인 경우	203,000	3년
	타-25	등·허리뼈 보조기 (dorsal, lumbar spinal brace) 마. 나이트식허리뼈 보조기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관절을 고정할 경우	136,000	3년
하지 보조기	타-29	무릎관절보조기 (knee ankle cage) 라. 플라스틱슬관절보조기 (수기공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 관절의 관절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할 경우	282,000	3년

(3) 기 타

구분	분류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 연한
구두	타-31	평상구두 (conventional shoe) 나. 목이 긴 구두 (high top shoe) 다 안장구두 (rocker bottom shoe)	발목관절의 관절 불안정성에 따른 관절운동 제한으로 평상화로 정상보행이 불가능한 경우(평상 구두를 보조기에 부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139,000 131,000	2년
		휠체어 타-32-3	활동형 휠체어 (light weight wheelchair for high activity level)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 자 중에서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는 경우	756,000
기 타	타-37-1	가발(wig)	환자 상병정도 및 체형 등에 따라 주치의 소견에 의하여 착용이 필요한 경우	깃 가	5년
	타-37-4	욕창예방방석 (고무제-공기격자형)	뇌손상, 척수손상과 그에 준하는 상병으로 인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를 사용하는 자 중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250,000	3년

구분	분류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 연한
기 타	타-37-5	육창예방메트리스 가. 고무제-공기격자형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경이 불가능한 사지마비로 인하여 육창이 발생하였거나 육창 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1,449,000	3년
		육창예방메트리스 나. 교대부양형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경이 불가능한 사지마비로 인하여 육창이 발생하였거나 육창 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400,000	3년
	타-37-6	집뇨기(고무제-역류방지형) (urine bag)	뇌손상, 척수손상, 말초신경손상, 비뇨기계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배뇨 제어가 어려운 경우	57,000	1년
	타-37-7	이동식 리프트 가. 본체	통원요양 중인 산계근로자로서 뇌 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사지 마비로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 우	1,700,000	5년
		이동식 리프트 나. 베이스	통원요양 중인 산계근로자로서 뇌 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사지 마비로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 우	800,000	5년